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

서영호 / 공정위 독점관리과 사무관

I. 하도급법의 시행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原事業者, 하도급을 주는 자)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보완입법 특별법으로서 1985. 4. 1부터 하도급법(정식명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시행·운용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은 거래주체의 대등성(對等性)을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법(經濟法)의 하나이다.

II. 하도급법의 목적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 하도급을 받는 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市場失敗) 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하도급법의 체계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조항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발주자의 의무사항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은 8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①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② 선금금 지급의무, ③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④ 검사 및 검사결과와 통지의무, ⑤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⑦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⑧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이다.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은 10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②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③ 부당한 수령거부금지, ④ 부당반품금지, ⑤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⑥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금지, ⑦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⑧ 부당한 경연간섭금지, ⑨ 보복조치금지, ⑩ 탈법행위금지이다.

3. 발주자의 의무사항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이며,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은 ① 서류보존의무, ② 신의칙 준수 의무, ③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의무, ④ 증거서류제출의무이다.

4.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司法的) 제재로 되어 있으며, 행정적 제재로는 ① 시정조치(시정명령, 시정권고 등), ② 범위반사실의 공표명령, ③ 과징금 부과, ④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가 있고, 사법적 제재는 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②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형, ③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이 있다. 단 사법적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IV. 하도급법 적용대상여부의 판단기준

하도급법 적용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은 거래내용, 거래주체, 거래시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거래내용은 양당사자의 거래관계의 성격이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에 해당되어야 하고, 거래주체는 거래관계의 양당사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거래시기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라 함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 수리위탁, 건설위탁을 하거나, ②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



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를 “목적물”이라 함)을 제조, 수리,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이를 “하도급대금”이라 함)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이며, 다만 제조위탁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에 의한 위탁이 포함된다.

2. 원사업자

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에 있어서의 원사업자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되는 자는 ①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을 한 대기업자, ②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자라 하더라도 ① 제조업,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② 건설업,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위의 원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된다.

나. 건설위탁에 있어서의 원사업자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중소기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대기업자
- ②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이 '95. 4. 1~'97. 3. 31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도급한도액합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건설위탁을 받은 자의 2배를 초과하되 도급한도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인 중소기업자
- ③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이 '97. 4. 1~'97. 6. 30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도급한도액합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건설위탁을 받은 자의 2배를 초과하되 도급한도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 ④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이 '97. 7. 1~'99. 3. 31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건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되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 ⑤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이 '99. 4.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건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다만,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위의 원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과 마찬가지로 원사업자가 된다.

3. 수급사업자

대기업자 또는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대기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다. 또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속하는 중소기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다.



4. 특별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는데, 사업자가 계열회사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것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그 계열회사와 제3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된다.

5.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요건 파악을 위한 용어의 정의

가.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자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된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3년) 동안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된다.

나. 연간매출액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며, 직전사업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당해 사업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자산총액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적용하는데,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라. 상시고용종업원수

상시고용종업원 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를 말하는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97년까지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12월말 월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년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년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를 말한다.

그리고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를 들면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연간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 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적용한다.

마. 도급한도액 및 시공능력평가액

도급한도액 및 시공능력평가액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도급한도액 및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6. 발주자

발주자는 제조, 수리,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서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7. 거래시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므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증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거래가 종료된 날로 본다. **공정**

토막상식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下都給紛爭調整協議會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하도급거래 분야별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있으며 (사)한국공정거래협회에 제조·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각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 대표위원, 원사업자 대표위원, 수급사업자 대표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2,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토건도급한도액 순위가 100위 미만인 분쟁과 토목 또는 건축면허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분쟁이다.